

## 어린이용품 등의 안전검사 대폭 강화

- 어린이 놀이기구, 레이저 장난감, 바퀴운동화 등 -

제품안전정책과 공업연구원 임현진  
02)509-7236 hjlim@mocie.go.kr

기술표준원은 어린이 놀이기구 등 9품목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하고 어린이용 안전모 등 6개 안전검사기준을 개정하는 등 어린이용품 안전검사를 대폭 강화하여 2004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.

### □ 어린이 및 노약자 보호를 위한 9개 품목의 안전검사기준을 새로이 제정

- 어린이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한 바퀴운동화, 휴대용 레이저용품(레이저 장난감), 어린이 놀이기구, 롤러스포츠보호장구, 유아용 의자, 쇼핑카트, 크레용·크레파스의 안전검사기준을 국제표준 및 유럽표준 등의 선진국 기준을 반영하여 제정
- 또한, 옥실 등에서 노약자의 미끄러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미끄럼방지 타일 및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고장시 설치하는 차동차용 징지표지판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제정

### □ 운동용 안전모 등 4개 품목에 대한 안전검사기준을 강화 개정

- 운동용 안전모의 검사대상 범위에 롤러스포츠용 및 스키용 안전모를 추가하고, 특히 만 7세이하의 어린이용 안전모에 대해서는 별도 기준을 마련

- 소비자(특히, 어린이)들이 스포츠용 구명복(또는 부력보조복)으로 혼동하여 사용하는 수영보조용품도 검사대상에 포함

※ 수영보조용품 : 수영을 배울 때 사용자의 부양을 도와 물에 익숙해지게 하거나, 수영동작을 배우는 데 도움을 주도록 고안된 기구 물에서 안전을 확보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 아님.

- 생활 수준의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로 전문 헬스장 등을 이용하는 국민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가정용 헬스기구에 국한하여 검사하던 것을 가정 및 공공장소에 사용되는 모든 고정식 헬스기구에 대해 검사를 받도록 검사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안전검사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
- 휴대용 사다리는 검사범위에 세만로 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빈번한 원예용 사다리와 간단한 작업에 사용하는 도배용 사다리를 포함시켜 안전검사를 받도록 강화
- 다만, 모은·보냉용기 중 소비자의 안전위해의 우려가 적은 진공보냉병, 아이스용 자야, 냉장상자 등의 보냉용기는 의무 검사대상에서 업체가 원할 경우 검사를 받는 점정대상으로 완화



□ 가정용 화학제품(세정제, 접착제, 방향제)의 주의·경고 표시 강화

- 세정제, 접착제, 방향제에 대해서는 특별 표시항목을 신설하여 5%이상 멘센을 함유한 제품 등에 대해서는 “휘발성 유해함” 등의 경고 문구를 표시토록 하고, “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둘 것” 등을 추가로 표시토록 하는 등 주의·경고 표시를 강화


□ 그 외 안전검정 또는 품질표시대상으로 추가로 지정되는 공산품에 대한 안전검정 또는 품질표시기준 제·개정

- 안전검정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스케이트 보드, 침대 매트리스, 보냉용기에 대한 검정기준을 제정하고, 학용품에 대해서도 “어린이용 필기·마킹용 캡”에 대한 안전요건을 신설하는 등 안전검정기준을 강화 개정

- 품질표시대상으로 추가 지정된 섬유유연제, 탈취제, 습기제거제, 썩크대 에 대한 표시기준을 제정하고, 표백제(락스를 포함) 및 침대에 대한 표시기준을 강화 개정

※ 기술표준원 홈페이지(www.ats.go.kr) 『공지사항』에서 제·개정된 안전검사·안전검장·품질표시기준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음.

□ 공산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

- 가정용 화학제품으로 인한 어린이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안명옥 의원이 입법 발의한 ‘어린이보호포장’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 금년 10월내에 개정될 예정
- 기술표준원은 국민의 공산품 안전관리에 대한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안전검사체도를 강화하고, 품질표시체도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준비중 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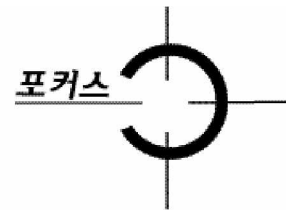
< 붙임 >

공산품 안전관리제도 개요

□ 안전검사(강제검사)

○ 개요 (법 제9조)

-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제조(수입)업자가 출고전 또는 동판전에 모델별로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제도
- 정기검사 : 연1회 이상 실시 (안전성 유지 여부 확인)



○ 안전검사대상공산품 (시행규칙 제4조)

- 소비자의 생명·신체상의 위해, 재산상의 손해 또는 자연환경훼손의 우려가 있는 공산품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

분 야	안전검사대상공산품 (39품목)
섬 유 (3)	등산용 로프, 가속눈썹, 스포츠용 구명복
화 학 (9)	건전지(단추형을 제외한다), 자동차용앞면창유리세정액, 부동액(방식제류를 포함한다), 자동차용 브레이크액, 자동차용안전유리, 자동차용재생타이어(트레드고무를 포함한다), 크레용·크레파스, 유해물질함유 화학제품(세정제, 접착제, 방향제에 한한다), 저독성 페인트
금 속 (3)	가정용압력냄비·가정용압력솥, 휴대용 사다리, 휴대용 동력 예초기용 회전절단날
생활용품 (24)	유모차, 보행기, 유아용 침대, 인라인롤러스케이트, 킥보드, 작동완구·비작동완구[유아용딸랑이, 뽀뽀이, 치아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에 한한다], 젓병·젓꼭지,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, 물놀이기구, 승차용 안전모, 운동용 안전모, 비비탄총, 이륜지전거, 헬스기구, 가스라이터, 보온용기, 롤러스포츠보호장구, 미끄럼방지타일, 바퀴운동화, 쇼핑카트, 어린이놀이기구, 유아용의자, 자동차용정지표지판, 휴대용레이저용품

※ 비고 : 크레용·크레파스, 롤러스포츠보호장구 등 9품목은 '04. 12. 9부터 적용

○ 안전검사절차

-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 신청
- 안전검사기관에서 모델별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,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“안전검사합격증서” 교부
  - \* 안전검사 시료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출
  - “안전검사합격증서”를 교부받은 모델에 한하여, 「검·마크 및 표시사항을 부착하여 유통

○ 안전검사기관 : 한국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

○ 수검업체 : '04. 5월 누계 3,928업체 10,540기 (수입 : 2,631업체 7,062기)

○ 사후관리 : 시·도지사

○ 행정조치사항

- 안전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,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하고, 개선하지 아니한



-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명령
-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공산품에 「검」마크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파기 또는 수거명령
- 안전검사에 합격한 공산품으로서 「검」마크 또는 안전검사 표시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
- 필요시 위해사실의 공표 및 교환·환불·수리명령
- 벌칙 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  - 안전검사 미필 또는 불합격 제품에 「검」마크를 표시한 제조·수입업자
  - 「검」마크가 없는 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·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

### □ 안전검정(임의검사)

- 개요 (법 제16조)
  - 안전검정대상공산품 사용으로 인한 소비자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검정기관에서 임의검사를 실시하는 제도
  - \* 행정처분 및 벌칙 없음.
- 안전검정대상공산품 (시행규칙 제13조)
  - 안전검사대상공산품 이외의 공산품으로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산업차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

분 야	안전검사대상공산품 (31품목)
섬 유 (4)	유해물질함유섬유제품(가속눈썹을 제외한다), 텐트, 반사안전조끼, 양탄자
화 학 (8)	유해물질함유화학제품(세정제, 접착제, 방향제를 제외한다), 합성세제, 벽지 및 종이장판지, 물휴지, 수경, 불꽃놀이제품, 양식용 부자, 자동차용 타이어
기 계 (2)	자동차용 휴대용 잭, 빙삭기
토 건 (1)	물탱크
생활용품 (16)	학용품, 롤러스케이트, 아동용이단침대, 유아용삼륜차, 비작동완구[유아용팔랑이, 백백이, 치아용 발육기 및 유아용 실내그네는 제외한다], 식탁용품·주방용품, 간이빨래걸이, 가족제품, 안경테, 선글라스, 우산및양산, 보안경(TV용), 스키용구, 스케이트보드, 침대매트리스, 보냉용기

※ 비고 : 스케이트보드, 침대매트리스, 보냉용기등 3품목은 '04. 12. 9부터 적용



- 안전검정기관 : 한국화학시험연구원 등 6개 기관
- 수집업체 : 6품목 24업체 33건 ('04. 5월 현재)

□ 품질표시 (임의제도)

- 개요 (법 제8조)
  - 소비자가 성분· 성능 또는 규격 등을 식별하기 곤란한 공산품으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산품(품질표시대상공산품)으로,
  - 식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,
  -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에게 이의 준수를 권고하는 제도
- 품질표시대상공산품 (시행규칙 제3조)

분 야	품질표시대상공산품 (24 품목)
섬유제품 (4)	의류, 한복, 수의류, 그밖의섬유제품(양말, 손수건, 타올, 머플러, 스카프, 쇼울, 넥타이, 이불, 요, 가방)
화학제품(10)	화장비누, 표백제, 화장지(두루마리 및 평면), 1회용기저귀(유아용, 성인용), 합성수지제주방용품 및 일반용품, 연질염화비닐(PVC)호스, 합성수지제필름, <del>섬유유연제, 습기제거제, 탈취제</del>
생활용품 (6)	테니스 라켓, 배드민턴 라켓, 안경테, 선글라스, 우산· 양산, 가구
귀금속품 (4)	목걸이, 반지, 수저, 그밖의 귀금속가공상품

※ 비고 : 섬유유연제, 습기제거제, 탈취제 등 3품목은 '04. 12. 9부터 적용